

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41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춰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 전부개정을 통해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환경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-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  -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하고
  - 안 제3조에서 시장, 구청장, 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

-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안 제6조에서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서 학교, 사회환경교육, 사업자 및 공무원에 관한 환경교육 사항을 규정
-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서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서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동전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고,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사항을 규정하여 폭넓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